주식회사 에어스메디컬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, 13-14 층
Tel. 070-7777-3186 / www.airsmed.com

평가판이용계약서

본 평가판이용계약("본 계약")은 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당사자("갑")와 주식회사 에어스메디컬("을") 사이의 계약입니다. 본 계약은 귀하가 함께 제시된 "이 계약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"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"데모 신청하기" 버튼을 클릭한 날("시행일")부터 유효합니다. 고용주나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(i) 본인에게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대리하는 당사자에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구속할 충분한 법적 권한이 있으며, (ii)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, (iii) 본인이 대리하는 당사자를 대신해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. 준수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면 함께 제시된 "이 계약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한다." 체크박스나 "데모 신청하기"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 (총칙)

본 계약은 "을"이 "갑"에게 SwiftMR 평가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"갑"이 이를 이용한 의료영상 처리 행위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수반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 (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.

1. "**본 소프트웨어**"란 "갑"이 본 이용계약서에 동의함으로써 설치되거나 "을"이 "갑"에게 설치하여 주는 SwiftMR 을 가리키며, 계약 기간 중 제공되는 업데이트된 버전을 포함한다.
2. "**제공자료**"란 매뉴얼 등 본 소프트웨어와 함께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. 처리완료 정보는 제공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.
3. "**평가기간**"이란 "갑"이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, 사용법 교육 등이 완료되어 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날로부터 1 개월간을 의미한다.
4. "**유료계약기간**"이란 "갑"이 평가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의미한다.
5. "**계약기간**"이란 평가기간과 유료계약기간을 의미한다.
6. "**평가목적**"이란 "갑"이 평가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의미한다.
7. "**진단목적**"이란 "갑"이 진료하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의미한다.
8. "**처리대상 정보**"란 "갑"이 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"을"에게 전송하는 DICOM 포맷의 영상 및 그 헤더 정보 등 메타 정보를 의미한다.
9. "**처리완료 정보**"란 "을"이 "갑"으로부터 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전송받은 처리대상 정보를 처리한 다음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"갑"에게 제공하는 DICOM 포맷의 영상 및 그 헤더 정보 등 메타 정보를 의미한다.
10. "**비밀정보**"란 본 소프트웨어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하여 "갑"이 "을"로부터 지득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로서, 제공자료, 본 이용계약서의 내용, 본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상일 경우 이용요금을 포함한다. 처리완료 정보는 그에 해당하는 처리대상 정보와 결합될 경우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해당한다. 그 밖에 다음

각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가) "갑"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

나) "갑"이 "을"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

다) 제 3 자가 "을"에 대한 계약 또는 법령 상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없이 적법하게 "갑"에게 제공한 정보

제2조 평가기간 및 책임의 제한

1. 평가기간 동안에는 아래의 조건이 적용된다.
   가) 본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된다.
   나) 본 소프트웨어는 일체의 명시적·묵시적 보증 없이 제공 당시의 상태 그대로 "갑"에게 제공되며, "을"은 본 계약에 따라 "갑"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허락하는 이외에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.
   다) 서버의 운영 점검, 장애, 기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.
   라) "을"은 "갑"이 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제 3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아무런 보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마) 본 조에도 불구하고 "을"이 "갑"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, 그 액수는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하여 금 일백만(1,000,000)원을 한도로 한다.
   바) "갑"이 평가기간 동안 본 소프트웨어를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. ('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' 제 6 조 제 2 항 제 2 호)
2. 유료계약기간 동안 본 소프트웨어 및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조건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별도의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이용계약서에서 본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적용된다.
3. 평가기간 또는 유료계약기간을 불문하고,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완료 정보의 해석 및 활용, 진단목적에의 적합성 판단은 오로지 "갑"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.

"갑"은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있어 의료행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반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. "을"은 이를 위하여 "갑"의 구체적인 지시 및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, "갑"에 대하여 위 법령 및 규제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제3조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 권한

1. "을"은 "갑"에게 평가기간 동안 및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유료계약기간 동안 본 이용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,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이용 권한을 부여한다.
2. "갑"은 "갑"이 점유하고 "갑"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있는 컴퓨터로서 "갑"이 통제·관리하는 컴퓨터 한 대에 한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. 그 외에 추가로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·이용하기 위해서는 "을"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.
3. "갑"은 "갑" 소속 임직원에 한하여 평가목적 또는 진료목적으로만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위 임직원이 본 이용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.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자의 행위는 "갑"의 행위로 간주된다.

4. "갑"은 최종 사용자로서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야 한다. 따라서 "갑"은 본 소프트웨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 3 자에게 배포 또는 대여하거나, 제 3 자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허락하거나, 제 3 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다.

제4조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 제한

1. "갑"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본 소프트웨어를 역설계(reverse-engineer)하거나, 디버깅, 디컴파일링 또는 디어셈블링하여서는 안 된다.
2. "갑"은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술적 사항을 유추하거나 파악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본 소프트웨어가 접속하는 서버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.
3. "갑"은 본 소프트웨어 이외의 수단(본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프로그램 포함)으로 처리대상 정보를 전송하고 처리완료 정보를 수신 받아서는 안 된다.
4. "갑"이 본 제 3 조에서 정한 바에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, "을"은 "갑"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본 소프트웨어에 의한 서버 접속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5조 본 소프트웨어 이용 정보의 수집·처리 및 활용

1. 처리대상 정보 및 처리완료 정보는 최장 24 시간 동안 "을"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임시 저장된 후 폐기된다. 환자의 진료 및 그 기록을 위한 처리대상 정보 및 처리완료 정보의 저장·관리는 오로지 "갑"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"을"은 처리대상 정보 및 처리완료 정보의 저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
2.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영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, "을"은 계약기간 중 "갑"의 본 소프트웨어 사용량 및 사용 패턴에 관한 정보를 수집·분석할 수 있다.
3. 본 소프트웨어의 오동작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, "을"은 "갑"의 본 소프트웨어 사용행위 및 본 소프트웨어의 동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·분석할 수 있다.
4. "갑"의 본 계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, "을"은 위 2 항 및 3 항의 정보와 본 소프트웨어가 이용되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·분석할 수 있다.

제6조 지식재산권의 귀속

1. 본 소프트웨어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(특허권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, 저작재산권, 영업비밀을 포함하여, 이하 같다)은 "을"에게 있으며, "갑"은 본 이용계약서에서 명시한 이외에 본 소프트웨어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.
2. "갑"은 본 소프트웨어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를 반영하여 본 소프트웨어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루어진 개선 사항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"을"에게 귀속된다.

제7조 비밀유지 의무

1. "갑"은 제 3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(비밀유지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제공하는

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음)하여서는 안 되고, 평가목적 또는 진료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2. "갑"은 평가목적 또는 진료목적을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"갑" 소속 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정보에 관하여 본 이용계약서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.
3. "갑"은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"갑"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위 주의는 최소한 동종 업계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과 동등하여야 한다.
4. "갑"이 법규 또는 법원이나 관할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명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야 할 경우, "갑"은 이를 지체 없이 "을"에게 통지하고, 제공·공개되는 비밀정보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유지하고, 제공·공개되는 비밀정보가 "을"의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, 그밖에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"을"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 계약의 해지

1.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, "을"은 7 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"을"은 "갑"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"갑"이 이미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, "을"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위 금액의 반환에 한정된다.
2.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상대방은 의무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, 그로부터 7 일 이내에 의무 불이행 상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본 조에 따른 해지는 법령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3.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, 제 4 조, **오류!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.**, 제 6 조 2 및 제 7 조, 그 밖에 그 성격상 해지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제9조 기타

1.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2.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3.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포기는 권리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해당 권리자가 그 포기를 명시하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만 유효하며, 권리 행사의 지체는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.
4. "을"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서면 통지는 아래 이메일로 한다.
   (a) 이메일: support@airsmed.com
   (b) 담당자 성명: 대표이사 이혜성
5. 본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이에 관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.